

## 다.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행자부자제 12200-87호, 2003.2.13)
-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홍수)

'98년부터 추진해온 지방구조조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직종·직급·직렬간 불부합되어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2003.2.28)이 도래됨에도 아직 해소하지 못한 정원 불부합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지침이 시달된 바,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521호, 부칙 제3조제2항 중 "현원 67명은 2003년 2월 29일까지"를 "현원 69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지방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한 조치로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종·직급·직렬간 불부합하는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불부합 현원관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종·직급·직렬간 정·현원의 불부합 내역을 보면 2002. 8. 1기준 정원조례상 총 정원수는 1,267명이며 이 총수범위 내에서 불부합 현원이 67명(일반직 30, 기능직 33, 고용직 4)이었으나 불부합 예정 현원이 69명(일반직 11, 기능직 48, 고용직 10)으로 조정된 것으로서 이를 살펴보면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일반직의 경우 불부합 인원은 19명이 감소(인사교류, 육아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되었고 기능직 15명, 고용직(지도원) 6명하여 21명이 증가된 불부합 인원입니다. 이중 기능직 12명, 고용직 6명하여 18명은 2002. 7. 31자 직권면직대상자로 분류되었고, 3명은 직종·직렬간 불부합 인원으로 추가 발생하였으나, 일반직의 경우 19명의 감소부분(인사교류, 육아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이 있어 이 인원수와 직권면직대상자로 분류된 18명을 구제하고 추가발생된 불부합 인원 3명 중 1명 총 19명을 상계조정하면 결국 2명의 불부합 인원이 발생되어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총 결원수 범위내인 69명의 불부합 초과현원을 관리하고 있는 결과로서 이러한 불부합 인원은 6월말 기준 정년퇴직, 명예퇴직 또는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조정이 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은 전국 시·도 및 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안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불부합 현원 관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37 |
|----------|----|

제출년월일 : 2003. 2. 7.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6550호)
- 지방구조조정과정에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 필요

## 2. 주요골자

조례 제52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7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되는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9명을 2003년 8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행자부자제 12200-87호, 2003. 2.13)
- 나.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52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 중 “현원 67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현원 69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부 칙(1999.12.30)<br>제1조(생략)<br>제2조(생략)<br>제3조(생략)<br>①(생략)<br>②<br>.....<br>.....현원 67명은 2003년 2월 28일<br>까지 ..... | 부 칙(1999.12.30)<br>제1조(생략)<br>제2조(생략)<br>제3조(생략)<br>①(생략)<br>②<br>.....<br>.....현원 69명은 2003년 8월 31일<br>까지 ..... |